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	--------

제출일자	2008. . .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7 ~ 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중 2007. 12. 31. 이전에 등록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을 적용하고, 2008. 1. 1. 이후 신규등록 차량에 대하여는 다른 7 ~ 10인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현행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군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조정(안 제15조의2)
: 전방조종자동차를 2008년부터 승용차로 과세하면서 2008년에는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에는 100분의 33을 경감하여 과세
→ 2007. 12. 31. 이전 등록 차량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함 : 65,000원
→ 2008. 1. 1. 이후 신규등록 차량은 승용차로 과세하면서 2008년은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은 100분의 33을 경감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7조·제9조·제196조의5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에

- (1)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입법예고(2008. 6. 20. ~ 7. 10.)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의2 본문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적용례)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의2(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u>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u></p> <p>1. 「<u>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u>」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p>	<p>제15조의2(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u>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한다.</u></p> <p>1. 「<u>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u>」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u>자동차관리법</u>」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u>지방세법</u>」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u>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u>」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u>자동차관리법</u>」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2. (생 략)</p> <p>부칙 (2008. 1. 9 조례 제1876호)</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p> <p>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④(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p>	<p><u>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12월 31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까지 효력이 있다.</p> <p>제3조(적용례)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	--------

제출연월일	2008. . . .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2005. 8. 4.)됨에 따라 인용하는 법령명칭을 변경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준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법률 변경(안 제9조, 제13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내용을 변경(안 제10조제4항)

- 위원 구성인원 변경: 15명 → 12명
- 실과장 중 임명 → 실과단사업소장 2/3임명, 민간전문가 위촉 1/3
- 위촉직 임기조항 신설

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내용 추가(안 제11조)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라.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변경(안 제12조)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준비기준」에 맞춰 용어순화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 % → 퍼센트 ○ 이내 → 내
- 기타 → 그 밖에 ○ 당해 → 해당 ○ 0인 → 0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3조, 제14조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8. 6. 11. ~ 6. 30.)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중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75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을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으로 한다.

제5조 제목·제1항·제2항 중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을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로, “70%”를 “70퍼센트”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과 제5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하고, 제2항의 “15인 이내”를 “12명 내”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재난 및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재무과장, 산림환경과장, 건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2조제2항 중 “연 1회”를 “연 2회”로, “때에”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로, “80일이내”를 “80일 내”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 ----- ----- -----.</p>
<p>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생략) 3. 기타 잡수입 등 	<p>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과 나머지 금액 및 발생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 ----- ----- ----- 제75조제2항에 따라 ----- ----- ----- 해당연도사용 기금액----- -----.</p>
<p>제5조(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p>제5조(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제6조에 따른-----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p>② 해당연도사용 기금액----- ----- ----- --.</p>
<p>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p>	<p>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 ----- -----.</p>
<p>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p>	<p>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 ----- -----70퍼센트 -----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회계공무원) ① (생략) 1. ~ 2. (생략)</p>	<p>제9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p>
<p>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 ----- ----- --.</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략)</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u>15인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략)</p> <p>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과장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신설></p> <p>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p> <p>② 정기회의 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u>연 1회</u>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p> <p>③ (생략)</p>	<p>② ----- 명-----<u>12명</u> 내-----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은 재난 및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재무과장, 산림환경과장, 건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p> <p>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p> <p>⑥ ----- ----- 명 ----- -----.</p> <p>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에 따른-----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p> <p>5. 그 밖에 -----</p> <p>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연 2회</u> ----- ----- 경우에는-----.</p> <p>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 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 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 1. ~ 3. (생 략)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p> <p>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 ----- ----- 80일 내----- -----.</p> <p>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p> <p>③ ----제1항에 따른----- ----- 회계 연도마다 -----.</p>